

# 「평창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 심사 보고서

###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1월 20일, 이은미 의원 발의
- 회부일자: 2024년 11월 25일 회부
- 상정일자: 제3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4년 12월 5일 상정 ·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은미 의원)

#### 가. 제안이유

-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가정의 아이돌봄 지원과 조부모의 손주돌봄 사회활동의 가치를 인정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지원 사업(안 제3조)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기준/신청방법/중지/환수(안 제4조 ~제8조)
-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안 제9조)
- 지원사업에 대한 위탁규정(안 제10조)
-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홍보(안 제11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옥)

※ 검토보고서 전문 ..... [붙임 1]

###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 5. 토론 요지: 「없음」

###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1부.

# 「평창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 첨 토 보 고 서

### 1. 조례안 개요

- 제안자 : 이은미 의원
- 제안일자 : 2024. 11. 20.
- 회부일자 : 2024. 11. 25.
- 상정일자 : 2024. 12. 5.

### 2. 제안이유

-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가정의 아이돌봄 지원과 조부모의 손주돌봄 사회활동의 가치를 인정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지원 사업(안 제3조)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기준/신청방법/중지/환수(안 제4조 ~제8조)
-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안 제9조)
- 지원사업에 대한 위탁규정(안 제10조)
-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홍보(안 제11조)

## 4. 검토의견

### 가. 관련 근거

- 「아이돌봄 지원법」 제3조에서 지자체는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 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20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 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나. 입법의 취지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3조(지원사업)에서 군수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함.

#### < 아이돌봄 지원사업 >

1.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
2. 법에 근거한 아이돌보미 사업
3.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안 제4조(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에서 평창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아이와 함께 거주하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음.

- 안 제5조(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음.

[참고] 평창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제5조 관련)

구 분	본인부담금 지원율(군비)	비 고
첫째아	50%	
둘째아 이상	70%	

- 안 제9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에서는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 및 직무수행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음.

## 5.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근거와 손주돌봄수당 지급 대상 및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자부담 비용 지원을 통하여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과 아이의 복지증진,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나,
- 본인부담금 지원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불임 관계 법령

### □ 아이돌봄 지원법

제3조(아이돌봄 지원의 원칙)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지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이라 한다)을 설치 ·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 · 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20조(비용의 지원 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및 부모의 취업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은 서비스의 종류, 해당 지역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원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2023.5.19.] 외 96건 (관내 6곳: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원주시, 화천군, 춘천시, 정선군)

# 평창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361
----------	-----

발의 연월일 : 2024년 11월 20일

발의자 : 이은미 의원

찬성자 : 남진삼, 박춘희, 이창열의원

## 1. 제안이유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가정의 아이돌봄 지원과 조부모 손주돌봄 사회 활동의 가치를 인정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지원 사업(안 제3조)
- 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기준/신청방법/중지/환수(안 제4조 ~제8조)
- 다.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안 제9조)
- 라. 지원사업에 대한 위탁규정(안 제10조)
- 마.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홍보(안 제11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 나. 예산조치 :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첨부)
- 다. 입법예고 : 2024. 11. 6. ~ 11. 19.(13일간). 의견없음.

라. 집행기관의견수렴 : 2024. 10. 29. ~ 11. 5. 아래표 참조.

원안(의회안)	수정안(가족복지과)	검토
제2조(정의)  5. “손주돌봄수당”이란 일하는 부모를 대신하여 자신의 손자녀인 아이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2조(정의)  5. “손주돌봄수당”이란 지정위탁기관을 통하여 손주 돌봄 양성 교육을 이수한 (외)조부모가 손주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사유 : 손주돌봄수당 지급대상과 기준을 명확히하여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함)	
[별표]  평창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  - 첫째아 : 70% - 둘째아 이상 : 100%	[별표]  평창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  - 첫째아 : 50% - 둘째아 이상 : 70%  (아이돌봄서비스의 무분별한 신청을 예방하고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을 조정하고자 함)	(부분 수용)  세 번째 의견인 별지서식 부분은 괄호안 내용인 미납시 해당 월 지원 불가는 삭제하여 반영함
[별지서식]  참고사항	[별지서식]  (추가)  ○ 본인부담액 납부가 확인된 경우 지원함. (미납시 해당 월 지원 불가)  (본인부담금 납부 연체를 방지하여 아이돌보미 급여적기 지원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평창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가정의 아이돌봄 지원과 조부모 손주돌봄 사회활동의 가치를 인정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손주돌봄수당”이란 지정위탁기관을 통하여 손주돌봄 양성 교육을 이수한 (외)조부모가 손주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6.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법 제11조에 의해 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군수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
2. 법에 근거한 아이돌보미 사업
3.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로부터 보호자가 평창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제5조(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은 [별표] 와 같다.

**제6조(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 등)** ① 제5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 의 평창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지원대상과 기준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7조(아이돌봄서비스 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환수 조치)** 군수는 제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① 군수는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군수는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제3조 각 호의 사업의 일부를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군수는 보호자, 아이돌보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에게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이해 증진과 참여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평창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제5조 관련)

구 분	본인부담금 지원율(군비)	비 고
첫째아	50%	
둘째아 이상	70%	

※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한하여 지원

※ 정부 지원 시간을 적용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별지 서식]

평창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서비스 이용 대상자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신청인과의 동거여부	서비스 유형 (담당자 확인)	
						시간제(기본□종합□)/종일제□ 가형□나형□다형□라형□	
						시간제(기본□종합□)/종일제□ 가형□나형□다형□라형□	
						시간제(기본□종합□)/종일제□ 가형□나형□다형□라형□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양육공백 유형	맞벌이□ 취업 한부모□ 다자녀□ 장애부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li> <li>○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li> <li>○ 본인부담액 납부 확인 후 지원함</li> </ul> <p>*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p>							
<p>『평창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평창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p> <p>20 년 월 일</p> <p>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b>평 창 군 수 귀하</b></p>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평창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p> <p>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 [관계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제3조(아이돌봄 지원의 원칙)**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지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아이돌보미의 직무 및 책무)**① 아이돌보미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아이돌보미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이에게 질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의 이송
2. 안전하고 균형있는 영양의 급식 및 간식 제공
3. 아이의 청결과 위생의 유지
4.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아이돌보미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아이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5. 19.>

④ 아이돌보미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아이의 생명·안전 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신설 2020. 5. 19.>

⑤ 아이돌보미는 보호자의 육아 방침을 존중하여야 하며, 응급조치 등과 관련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19.>

**제7조(아이돌보미의 자격)**①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20. 5. 19., 2022. 12. 27.>

1.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
2. 아동의 안전관리 교육
3. 성희롱 예방 교육

4. 아이돌보미의 인성함양

5.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 교육

6. 그 밖에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0. 5. 19.>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를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범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0. 5. 19.>

⑤ 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 및 제3항에 따른 적성·인성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5. 19.>

**제11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대상 아이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관련된 서비스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 서비스기관의 장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과 관련된 내용 및 절차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비용의 지원 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및 부모의 취업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

③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은 서비스의 종류, 해당 지역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비용 지원의 신청)**① 보호자는제20조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 제1항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 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비용추계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가. 조례안명 : 평창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 나. 관련조문 : 제5조, 제9조, 제11조
- 다. 비용발생 요인 : 평창군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 2.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1) 평창군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2)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지급 등 처우개선 지원
- 3) 아이돌봄사업 홍보비 등 제반비용

###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 소요액	94,000	103,000	114,000	125,000
평창군 아이돌봄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지원	75,000	85,000	95,000
	돌보미 처우개선	15,000	16,000	17,000
	제반비용(홍보비 등)	4,000	2,000	2,000

### 다. 재원조달 방안 : 자체재원

##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기획재정국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연락처	(033) 330 -2124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b>세 출</b>	94,000	103,000	114,000	125,000	136,000	572,000
평창군 아이 돌봄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75,000	85,000	95,000	105,000	115,000
	돌보미 처우개선	15,000	16,000	17,000	18,000	19,000
	제반비용 (홍보비 등)	4,000	2,000	2,000	2,000	12,000
<b>재원 조달</b>	94,000	103,000	114,000	125,000	136,000	572,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94,000	103,000	114,000	125,000	136,000
	지방세	94,000	103,000	114,000	125,000	136,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